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(문대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31 발의연월일: 2024. 6. 17.

발 의 자:문대림・복기왕・박홍배

김영호 • 위성곤 • 김한규

황운하 • 주철현 • 민홍철

송재봉 • 이원택 • 정준호

임미애 · 서삼석 · 오세희

강선우 · 김성환 의원

(17인)

제안이유

최근 고유가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원자재 및 에너지가격이 급등하여 농업 전반의 경영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임. 특히 농업 생산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필수농자재 매입비와전기요금 및 유류비가 급등하며 농업 경영위기는 전례 없이 심각한상황임.

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농업 경영에 필수적인 농자재 및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. 그러나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의 한계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못하 는 상황임. 따라서 농자재 및 농업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경 영위기를 맞이한 농업경영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비 급등으로 경영위기를 맞이한 농업경영체에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및 에너지 비용,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등의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경영체가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체의 경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인 농업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 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농업경영체 경영위기에 대응하고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대응 심의위원회를 둠(안 제5조).
- 다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비 실태조사와 농업경영비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.
- 라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필수농자재와 농업에너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.
- 마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농자재와 농업에너지비용을 지원할 경

- 우 저탄소 농자재를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함(안 제8조).
- 바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자금의 융자·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.
- 사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.
- 아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.

법률 제 호

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가가 경영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 체에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여 농업경영 체의 경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농업 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농업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.
- 2. "농업경영체"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 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.
- 3. "필수농자재"란 다음 각 목의 농자재를 말한다.
 - 가. 「비료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
 - 나. 「사료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
 - 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자재
- 4. "농업에너지비용"이란 농업 생산을 위해 지출하는 전기요금 및

유류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말한다.

- 5. "농업경영체 경영위기"란 필수농자재 가격과 농업에너지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상승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영 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.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 영체가 필수농자재 가격과 농업에너지비용 급등으로 인해 농업경영 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.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국가의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지 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추진체계 등

- 제5조(농업경영체 경영위기 대응 심의위원회) ① 농업경영체 경영위기에 대응하고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대응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6조(농업경영비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 경영위기(이하 "경영위기"라 한다) 극복을

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수급 및 가격 변동상황과 농업에너지비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·작 성할 수 있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영위기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경영비종합정보시스템(이하 "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 영할 수 있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·작성(이하 "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·작성"이라 한다)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(이하 "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"이라 한다)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·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수집된 자료·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·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·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의 지원 등

- 제7조(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비료·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증가한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농업경영체를 대 상으로 전기요금·유류비 등 농업에너지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증가한 농업에너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에너지비용의 지 원 기준·절차·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저탄소 농자재 우대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저탄소 농 자재를 우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.
- 제9조(자금 지원 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인건비 지원
 - 2.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자금의 융자 보조
 - 3. 스마트농업 설비투자 자금의 융자 · 보조
 - 4. 그 밖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 활동에 수

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융자・보조

- 제10조(고용보조금 등의 지급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1조(조세의 감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- 제1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4장 벌칙

- 제1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자료·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·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

2.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